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전화로 보험모집시 음성녹음 이외에 다양한 수단 활용 허용(안 제 43조2항 후단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고 있으나, 중요사항 설명 및 청약서류 작성 등을 위해 이메일, 문자메세지,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음성녹음 이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비대면 문화 확산,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변화된 보험산업 환경에 맞는 보험모집질서가 정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2.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(대통령령 제23479호 부칙 제2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 개정(‘21.4.13.)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특례 기간이 연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단위조합의 영업상 어려움을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